



이혼 후의 자녀호적과 호주제

최은순/변호사 www.womenlaw.co.kr

남 편과의 불화로 인해 이혼하고 6살된 어린 딸을 혼자 키우는 여자입니다. 딸 아이를 제 호적으로 옮기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아직 재혼을 한 상태는 아니나 재혼하면 장차 남편이 될 사람 앞으로 딸아이의 호적을 옮길 수 있는지요.

우리나라 가족관련법이 부계중심으로 편제되어 있어 이혼 후에 자녀의 호적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아버지의 가(家)에 입적하도록 하고 있고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자녀인 경우에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의 가(家)에 입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하는 경우에는 처(妻)만이 친가에 복직하거나 일가를 창립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자녀는 아버지의 가(家)의 호적에 그냥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 후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어머니인 여성인 경우에 호적상의 기재를 현실적인 자녀양육상태와 같이 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은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에 부딪치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시원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남녀차별적인 호주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호주제 철폐운동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

다.

앞으로 호주제 철폐운동으로 인하여 이러한 민법 조문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는다면 모를까 현행법상으로는 직접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회적이고도 번거로운 방법로나마 이혼한 어머니와 그 딸이 동일호적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가족은 미성년자이더라도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분가할 수 있으므로 일단 그 딸을 임의분가 시켜 호주가 되도록 한 다음 그 호적에 어머니가 가족으로 입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머니의 호적에 바로 그 딸을 입적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규정상 가능할 것 같다는 해석도 일부 있으나, 현행법 체계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혼한 어머니가 재혼을 할 경우에 전남편 호적에 딸이 그대로 있는 경우에는 호주인 전남

편의 동의를 받아 어머니와 같이 어머니와 결혼하는 남편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남편의 동의를 받아 딸을 남편의 양자로 입적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재혼하기 전에 어머니와 딸이 이미 동일호적에 있다면 재혼하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 딸과 함께 남편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현행법상 딸의 성(姓)을 바꿀 수는 없으므로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는 남습니다. PPFK

